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 12. 13.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7년 11월 19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07년 11월 20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7. 11. 30)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박정희)

가. 개정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민원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제명 변경하고
- 위원회의 기능 중 장기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민원사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주무부서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해당 민원 소관 국장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안 제3, 4조)

- 위원회의 소집 등에 있어서 회의소집을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여 민원처리에서의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김 병 욱)

- 안 제7조에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위원 3인 이상”의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조정된 것은 개최의 자유로움을 제한시키며, 회의소집을 현행보다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의 의무화 하고 있으나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라고 명시된 것처럼 우리 구에 유사기능과 중복성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조례 안은 날로 복잡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각종 분쟁을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지역주민들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고 시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01 |
|----------|-----|

제출연월일 : 2007.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민원조정 위원회 조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민원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제명 변경**
- 나. 위원회의 기능 중 장기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민원사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주무부서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법령이나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안 제2조)
- 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해당 민원 소관국장**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도모**(안 제3,4조)
- 라. 위원회의 소집 등에 있어서 **회의소집을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여 민원처리에서의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3.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3조
- 나.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입법예고 : 의견없음(2007. 10. 3 ~ 10. 22)

별첨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 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민원사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처리주무부서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서면의견진술에 따른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하는데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민원 소관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그 밖의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할 때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민원사안에 따라 5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붙일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고충민원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이 관련된 구분청국장, 보건소장 또는 과장, 민원발생 관할동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민원사항과 관련된 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